

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57조에 따라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

◆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1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
 - 가.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나.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다.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 - 라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 - 마.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2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등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
 - 가.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 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- 나.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정보
 - 다.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◆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
1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
 - 가. 생산·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 - 나. 금융투자업의 종류(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) 및 겸영·부수 업무
 - 다. 구체적인 업무특성,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
 - 라.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
2.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

◆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1.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2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3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.
4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.

◆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1.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.
2.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◆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1. 고객이익 우선
 - 가.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.
 - 나.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.
 - 다.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.
2. 이해상충 문제의 숙지 및 차단
 - 가.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,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.
 - 나.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,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이해상충의 파악·평가 및 관리 등
 - 가.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

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- 나.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,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다.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,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, 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4.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

- 가.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.
- 다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라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마. 라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바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가항 내지 마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